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57
----------	-------

발의연월일 : 2026. 2. 23.

발 의 자 : 김선민 · 서미화 · 이주희
강경숙 · 서왕진 · 전진숙
황운하 · 정춘생 · 신장식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그런데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상당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대만은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노란 형광색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

씨의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효과를 보았으므로 우리나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우리나라도 시·도경찰청장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번호판을 형광색의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을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이하”를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하며,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한다.

④ 자동차 소유자 중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신청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번호판(「도로교통법」 제50조의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4항 및 제6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1호 중 “제10조제7항에서”를 “제10조제8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6항(제10조제8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3 중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7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2조제1호의2 중 “제10조제9항을”을 “제10조제10항을”로 한다.

제84조제3항제1호 중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5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조제6항(제10조제8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0조제7항에서”를 각각 “제10조제8항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 ·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여야 한다. 다만, 자 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 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 ----- -----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하며, 이하----- -----. ----- ----- ----- ----- ----- ----- ----- ----- ----- -----.
② · ③ (생 략)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 소유자 중 「도로교 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 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 · 도 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④ ~ ⑥ (생략)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
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
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
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
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를 준용한다.

⑧ · ⑨ (생략)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
항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
체 신청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제7항까지를

⑨·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

-----이륜자동차번호판(「도로교통법」 제50조의 3에 따른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특수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제1항,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10조제4항 및
제6항(제10조제8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 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 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검사기술 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뒀던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
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
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 28. (생략)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제81조(벌칙) -----

1. -----제10조제8항에
서-----

1의2. 제10조제6항(제10조제8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

1의3. 제10조제7항(제10조제8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 28. (현행과 같음)

제82조(벌칙)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그
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 8. (생략)

제8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
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
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
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
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
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
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
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
외한다)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0조제10항을-----

2. ~ 8. (현행과 같음)

제8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10조제5항(제10조제8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2. 제10조제6항(제10조제8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11.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의2. (생략) 2. 제10조제1항 단서(<u>제10조제7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u>제10조제7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 24. (생략) ⑤ · ⑥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④ ----- ----- -----. 1. 1의2. (현행과 같음) 2. -----<u>제10조제8항에서</u>----- ----- ----- 3. -----<u>제10조제8항에서</u>----- ----- ----- ----- 4. ~ 24.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